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평생학습 및 직무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확대〉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8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14.
3. 회부연월일 : 2026. 5. 1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이외에도, 특정 자격 취득 또는 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학습계좌제 역시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 만큼,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학점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또한 점차 확대됨.

이에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연구·실습·업무수행 등으로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제8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평생학습계좌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대학 수준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업무수행 등의 경험을 쌓은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학점인정) ① (생략)                                       | 제7조(학점인정)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br>-----<br>-----<br>-----.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7.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
| <u>&lt;신설&gt;</u>                                      | 8.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연구·실습·업무수행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
| ③ ~ ⑤ (생략) | <p style="text-align: center;"><u>사람</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

## 2. 검토의견

-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sup>1)</sup>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sup>2)</sup>뿐만 아니라 일정한 학교·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대학 등의 시간제등록을 통한 수업 이수, 국가자격·공인민간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5. 3. 27., 2023. 8. 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삭제 <2001. 3. 28.>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3. 3. 23.>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원 등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학점인정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

또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함.

- 한편,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습계좌<sup>3)</sup>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 문해교육 및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등 초·중등 학력과 연계하여 활용되고 있음.

-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그 인정 절차 및 방식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평생교육

---

3)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학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력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이 학점인정 대상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생학습계좌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결과<sup>4)</sup>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학력인정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이 평생학습계좌제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대학 수준에 해당하는 과정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 및 학위 취득과 연계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특히 평생학습계좌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에는 대학 수준에 미치지 않는 다양한 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학점인정 대상을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학습과정’으로 한정 한 것은 학점은행제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과 연계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능력개발을 위하여 이루어진 학습·연구·실습·업무수행 등의 경험을 보유한

---

4)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경영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상명대학교(천안)의 ‘코딩강사양성과정’,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세무회계사무원’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뿐만 아니라 산업체 등의 실제 현장에서 쌓은 학습·직무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 및 학위 취득과 연계하고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도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21대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발의<sup>5)</sup>된 바 있으며, 당시 교육부는 평생학습계좌제의 경우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과정으로 한정하고, 학습·직무경험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학점 인정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공 이외 교양과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 관련’ 경험으로 한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5)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123832호)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123864호)

## <유사 입법례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11. 28.>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 다만, 개정안에 따른 학점인정 제도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계좌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습·연구·실습·업무수행 등의 경험 역시 그 종류와 내용 및 수준이 매우 다양하므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험의 범위와 수준, 학점 산정기준 및 인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점인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

하는 입장이나, 학점인정 기준·절차 마련과 관련 규정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sup>6)</sup>도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학점인정 대상·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학점인정 심의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193 |

---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